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74

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 박지혜·위성곤·조인철

박해철 • 김성환 • 민병덕

이수진 • 이소영 • 김승원

전진숙 · 임미애 · 김 윤

강준현 · 서영교 · 오세희

민형배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회 내에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감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.

그러나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만 쓰인 종이 인쇄물 제작 비용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등, 그동안 국회에서 종이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음.

이에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하고,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하여 친환경 국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70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0조(종이문서의 감축) ①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,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종이문서가 더욱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경우,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있다.

- ②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 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③ 국회는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 종이문서의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문서 사용을 모범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제170조(종이문서의 감축) ① 국회는 회의 및 각종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, 보고 및 관리 등에 사용되는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종이문서가 더욱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경우,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② 의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③ 국회는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 종이문서의 감축등이 필요한 경우에 전자문서 사용을 모범적으로 이행할 것
	을 권고할 수 있다.